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문금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170

발의연월일: 2024. 8. 23.

발 의 자:문금주·한민수·신영대

조인철 · 오세희 · 위성곤

권향엽 · 문정복 · 이정문

조계원 · 정성호 · 이연희

박민규 · 문대림 · 이광희

채현일 · 황정아 의원

(17일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은 현재 지방공기업법 상 '임의적용사업'으로 분류되고 있으며, 사채발행 한도가 제한되어 있음. 이러한법적 제한은 공공성이 높고 안정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사업 기회를 제한하고 있음.

최근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안보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, 지방도시개발공사는 주택과 토지개발사업에 더해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.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을 넘어서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.

이 같은 긍정적 영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이 공공재 성

격을 가진 햇빛, 바람, 해양 등의 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, 민간 기업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추진을 통해 발전수익이 최대한 지역에 환원되도록 하여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지방공기업법상 '당연적용사업'으로 명시하여, 지방공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,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,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1항제11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항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신ㆍ재생에너지사업

_	5	_	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조(적용 범위) ① 이 법은 다	제2조(적용 범위) ①		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			
하는 사업(그에 부대되는 사업			
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중 제			
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			
접 설치 · 경영하는 사업으로서			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			
상의 사업(이하 "지방직영기업"			
이라 한다)과 제3장 및 제4장			
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			
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			
하여 각각 적용한다.			
1. ~ 10. (생 략)	1. ~ 10.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11. 신ㆍ재생에너지사업		